

2021년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채용 공고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산림교육원장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무장소	담당업무
청원경찰	1명	산림교육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 청사방호 및 출입자 관리 · 안전 및 질서유지 · 기타 산림행정 보조 업무

※ 근무형태 : 주말근무 및 주야간 교대근무

※ 임용예정시기 : 2021년 7월

2 근거법령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제4조(임용방법 등)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1)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채용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2003.12.31. 이전 출생자)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학력, 경력, 성별, 거주지 제한없음
-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주·야간 및 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2) 우대요건[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분야		우 대 요 건
구분	내용	
우대 요건	관련 분야 근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방호·시설 관리 분야 근무 경력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전직경찰, 청원경찰, 방호직공무원, 경호·경비, 감시원 등 해당 분야) - 경비·방호·시설 관리 분야 근무경력만 인정, 제출된 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내용과 전담 및 상근여부(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담당 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붙임의 경력증명서 양식 제출(상기 내용이 모두 기재된 경우 자체 양식 제출가능) - 증빙서류는 사본으로도 제출가능하며,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고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직증명서 제출 시 경력기간은 증명서 발행일까지 산정함 - 비상근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산정되므로 근무시간을 기재 - 폐업회사인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홈텍스 발급 가능) 과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업무내용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등 함께 제출)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직무 관련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지도사(일반,기계) ○ 응급구조사 ※ 2종 이상 복수 우대
	직무 관련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경호,안전,경비 전공분야 전문학사 이상
	무도 단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무도자격증 소지자 - 유도·검도·태권도·복싱·레슬링 2단 이상 또는 합기도 2단 이상 ※ 2종 이상 복수 우대(2단이상 2개까지만 제출)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1가지만 인정)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응시 자격, 우대 요건 및 가점 해당 이외의 자격증 등 제출 금지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무도관련 응시자격요건 인정단체 : '21년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61개 		

4 시험 방법

1) 1차 서류전형

-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적격 또는 부적격)을 결정
- ②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③ 서류전형 평가항목
 -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우대요건) 근무경력, 자격증, 무도단증, 학력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요건】

①경력(재직)증명서, ②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내역, ③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진위여부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경력 인정

※ 경력 진위여부 확인 절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1)건강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2)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행)을 모두 제출**(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경력조회 실시

2) 2차 면접시험

-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 평정요소(5)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합격자 결정 :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란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불합격 기준 : 심사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 항목을 “하”로 평정한 경우
 -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선발

- ③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추가합격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별도 채용절차없이 면접시험 채점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처리함.

3) 임용방법

- ① 최종합격자의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을 시, **6개월 시보임용**
 ② 시보기간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후 정규임용
 ※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분	일정	내용
채용공고	2021.5.11.(화)	산림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21.5.12.(수)~5.17(월)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5.25.(화)	산림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면접시험	2021.6.1.(화)	산림교육원 ※세부일정 및 시험장은 별도 통보
최종 합격자발표	2021.6.11.(금)	산림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1) 응시원서 교부

- 산림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2) 접수기간 : 2021. 5. 12(수) ~ 2021. 5. 17(월)

3) 접수처 :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

- 주소 : (우1200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197,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
- 전화 : 031-570-7313
- 약도 : 산림교육원 홈페이지 → 찾아오시는 길 참조

4) 접수방법 : 우편접수

-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
- ②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함
 -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만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 ③ 인터넷 및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7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미제출시 채용 심사가 불가함)

- 1) 응시원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2호]
 - ※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5,000원) 구매·제출(원본)
- 2) 이력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3호]
- 3) 자기소개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4호]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5호]
-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 여성응시자의 경우에도 필수 제출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7호]
- 7)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8호]
- 8)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제6호]

<유의사항>

- 사본 제출 가능하며 단,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2.17~5.17)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9)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10) 무도단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11) 졸업증명서(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12) 취업지원대상자 관계기관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 사항

- 1) 산림교육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기소개서 등에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처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임용)
- 4) 응시원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5) 응시원서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내용의 변경시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당초 공고문을 게시한 모든 매체에 변경된 사항을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7)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9)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며 7월 중 채용 예정입니다.

※ 관사는 제공되지 않음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031-570-7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최근 2주 내 해외 입국자, 의심증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시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가 응시하는 경우, 미리 채용담당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체온측정 및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채용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조치 되거나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퇴실 조치 할 수 있으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